

교수학습개발센터 운영 규정

제정 2023. 11. 24.

제1차 개정 2025. 7. 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AI융합교육혁신원 교수학습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 및 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2.)

제2장 조직 및 업무

제2조(조직) ① 센터에는 교수학습개발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두며, 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AI융합교육혁신원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7.2.)

② 센터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연구전임교원, 전문연구원, 직원 및 행정조교를 둘 수 있으며 임면에 관한 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3조(업무) 교수학습개발센터는 아래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혁신적 수업모델 개발, 연구 및 확산에 관한 사항
2. 교수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운영, 성과 평가, 환류에 관한 사항 (개정 2025.7.2.)
3. 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운영, 성과 평가, 환류에 관한 사항 (개정 2025.7.2.)
4. 비교과 프로그램의 통합 운영관리 및 유관부서와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25.7.2.)
5. 교수학습개발 및 비교과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5.7.2.)
6.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개정 2025.7.2.)
7. 삭제 (개정 2025.7.2.)
8. 삭제 (개정 2025.7.2.)
9. 삭제 (개정 2025.7.2.)

제3장 위원회

제4조(위원회 구성) 교수학습개발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교수학습개발센터 운영위원회, 비교과운영위원회를 둔다.

[전문 개정 2025.7.2.]

제5조(교수학습개발센터 운영위원회) ① 교수학습개발센터 운영위원회는 부서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9인 이내로 구성하며 교무연구처장, AI융합교육혁신원장, 교수학습개발센터장, 원격교육개발센터장이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위원장은 AI융합교육혁신원장으로 하며, 교수학습개발센터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25.7.2.]

제5조의1(교수학습개발센터 운영위원회 기능) 교수학습개발센터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수학습개발센터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수학습개발센터 운영 규정 개정 및 폐지
3. 교수학습개발센터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본조 신설 2025.7.2.]

제5조의2(교수학습개발센터 운영위원회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결의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 신설 2025.7.2.]

제6조(비교과운영위원회) 비교과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정 운영규정」에 따른다.

[전문 개정 2025.7.2.]

제4장 기타

제7조(규정등의 제·개정) ① AI융합교육혁신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를 발의할 수 있다. (개정 2025.7.2.)

② 교수학습개발센터의 운영에 관한 내규 및 세칙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규정 등의 제·개정 절차 및 세부사항은 「제규정 기본 규정」 등 관련 제 규정을 따른다.

④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부칙 (기획예산팀-2472, 2023.11.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교수학습개발지원위원회 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교수학습개발지원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교수학습개발지원위원회 규정」에 따라 위촉된 교수학습개발지원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부칙 (기획예산팀-1468, 2025.07.0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련 지침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으로 인한 관련 지침, 내규 등은 제규정기본규정 제7조1항에 따라 각 업무소관부서장이 개정한다.